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
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
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(안 제9조 별표 제1호 나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“부과기준”을 “가중된 부과기준”으로, “과태료를 부과받”을 “과태료 부과처분을 받”으로 하고, 같은 목 후단 중 “위반 횟수는 같”을 “기간의 계산”으로, “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”를 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”로, “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”을 “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”으로, “하여 계산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호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 표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조 관련)</u>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기준은</u>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<u>과태료를 부과받은</u>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<u>위반횟수는 같은</u> 위반행위에 대하여 <u>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을</u>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 <u><신 설></u> 나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	[별 표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조 관련)</u> 1. 일반기준 가. ----- <u>가중</u> 된 <u>부과기준은</u>----- <u>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</u>----- ----. ----- <u>기간의 계산은</u> --- ----- <u>처분을 받은 날과 그</u> <u>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</u> <u>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</u> <u>다.</u> 나. <u>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</u> <u>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</u> <u>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</u> <u>수(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</u> <u>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</u> <u>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</u> <u>다음 차수로 한다.</u> 다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423